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670-10



2026 노인복지시설 현황



〈2025.12.31. 현재〉



보건복지부

이 용 안 내

- 『2026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의 한글파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www.mohw.go.kr
 - 경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노인복지시설현황 검색
 - 통계 공표일 : 매년 6월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법 제38조제1항제5에서 정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 포함('19.12.12. 시행)

가. 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 치 목 적	입소(이용)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하 “살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성질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이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
재가노인복지시설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장기요양수급자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재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방문간호서비스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등이 필요한 사람 다.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라.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마.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로부터 바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서비스가 필요한 자 사.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상담용 긴급전화(1577-1389) 운영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시·도지사 지정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회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60세 이상	시도 및 시군구 신고
학대피해노인전용센터	학대피해노인전용센터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장의 입소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하는 경우	시·도지사 지정

나.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종 류	시 설	2025		2024		2023		2022		2021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97,232	442,894	96,430	412,917	93,056	387,391	89,698	358,447	85,228	321,500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 계	283	21,799	281	19,412	297	19,369	308	19,355	337	19,383
	양로시설	171	10,164	166	9,567	175	9,653	180	9,752	192	9,962
	노인공동생활가정	65	545	72	614	82	710	89	763	107	930
	노인복지주택	47	11,090	43	9,231	40	9,006	39	8,840	38	8,491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 계	6,211	257,448	6,195	250,898	6,139	242,974	6,069	232,235	5,821	214,683
	노인요양시설	4,758	244,507	4,640	236,365	4,525	228,495	4,346	216,784	4,057	199,13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453	12,941	1,555	14,533	1,614	14,479	1,723	15,451	1,764	15,54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71,309	0	70,935	0	70,455	0	69,786	0	68,823	0
	노인복지관	459	0	454	0	438	0	366	0	357	0
	경로당	69,687	0	69,260	0	68,792	0	68,180	0	67,211	0
	노인교실	1,163	0	1,221	0	1,225	0	1,240	0	1,255	0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9,146	163,647	18,745	142,607	15,896	125,048	13,272	106,857	9,984	87,434
	단기보호서비스	51	523	60	255	60	646	70	463	69	513
	방문간호서비스	435	0	376	0	295	0	234	0	158	0
	방문목욕서비스	4,135	0	4,794	0	4,070	0	3,394	0	2,415	0
	방문요양서비스	9,266	0	8,668	0	7,192	0	5,808	0	4,156	0
	복지용구지원서비스	789	0	718	0	540	0	368	0	208	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414	0	339	0	342	0	363	0	360	0
	주·야간보호서비스	4,056	163,124	3,790	142,352	3,397	124,402	3,035	106,394	2,618	86,921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40	0	39	0	38	0	37	0	37	0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23	0	215	0	211	0	206	0	206	0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0	0	20	0	20	0	20	0	20	0

주)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 : '08 및 '07년에는 시·군·구 조사 자료에 의거 입소정원을 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택은 1세대에 1명 또는 여러 명이 거주 가능하므로 입소정원이 없음. 따라서 '09년부터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정원을 세대수로 표기함('08년 노인복지주택 세대수는 2,596세대, '07년 2,012세대임)

주)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신고 된 시설 현황자료임.

주) 노인복지관 현황은 노인복지법에 제37조에 따른 노인복지관임.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총괄표

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25.12.31. 주민등록 인구기준)	계								양로시설							
		시 설 수	입소인원(세대)			종사자수			시 설 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정원 (분양)	현원						정원	현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10,840,822	283	21,799	15,537	2,237	3,786	3,468	923	2,545	171	10,164	5,738	2,126	3,612	2,072	393	1,679
서울	1,900,102	25	3,819	3,060	266	503	776	260	516	9	1,047	751	264	487	193	56	137
부산	818,835	7	1,854	954	145	164	110	30	80	5	987	309	145	164	86	22	64
대구	519,405	7	499	270	86	184	105	18	87	7	499	270	86	184	105	18	87
인천	575,012	16	824	477	73	103	140	53	87	9	335	157	66	91	75	18	57
광주	261,259	2	152	82	13	69	31	3	28	2	152	82	13	69	31	3	28
대전	275,406	7	504	300	47	60	56	11	45	3	247	94	38	56	37	5	32
울산	202,900	2	114	47	23	24	19	2	17	2	114	47	23	24	19	2	17
세종	48,115	2	115	104	7	1	12	6	6	1	15	8	7	1	4	3	1
경기	2,434,194	100	8,163	6,126	556	1,091	1,105	291	814	60	2,986	1,562	530	1,032	623	111	512
강원	404,489	14	506	268	107	105	116	34	82	6	297	174	85	89	70	12	58
충북	368,000	20	470	302	128	148	100	24	76	7	307	207	102	105	64	10	54
충남	500,694	8	286	250	57	93	70	7	63	5	168	138	48	90	46	4	42
전북	458,975	14	1,757	1,561	123	204	186	71	115	7	448	321	120	201	119	30	89
전남	506,276	19	728	477	190	287	190	37	153	13	680	456	183	273	170	31	139
경북	688,172	24	1,133	702	190	420	252	45	207	21	1,015	610	190	420	237	40	197
경남	745,437	14	785	486	186	299	169	28	141	12	747	481	186	295	162	25	137
제주	133,551	2	90	71	40	31	31	3	28	2	90	71	40	31	31	3	28

주) 노인복지주택의 정원은 세대수(주택은 1세대에 노인 1명 또는 여러 명이 거주 가능하므로 정원이 없음),

(단위 : 개소, 명)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시설 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 수	세대		종사자수		
	정원	현원							분양	입주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5	545	285	111	174	153	51	102	47	11,090	9,514	1,243	479	764
3	18	18	2	16	10	2	8	13	2,754	2,291	573	202	371
0	0	0	0	0	0	0	0	2	867	645	24	8	1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36	19	7	12	8	4	4	3	453	301	57	31	2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17	13	9	4	7	1	6	1	240	193	12	5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96	8	3	5
22	189	85	26	59	48	15	33	18	4,988	4,479	434	165	269
7	63	38	22	16	15	7	8	1	146	56	31	15	16
12	103	69	26	43	32	13	19	1	30	26	4	1	3
2	18	12	9	3	4	1	3	1	100	100	20	2	18
3	27	6	3	3	6	2	4	4	1,282	1,234	61	39	22
6	48	21	7	14	20	6	14	0	0	0	0	0	0
2	18	0	0	0	0	0	0	1	100	92	15	5	10
1	8	4	0	4	3	0	3	1	30	1	4	3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총괄표

(단위 : 개소, 명)

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25.12.31. 주민등록 인구기준)	계								노인요양시설(개정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 설 수	입 소 인 원						시 설 수	입소인원						시 설 수	입소인원						시 설 수	종사자수					
			정원	현원			종사자수			정원	현원			종사자수			정원	현원			종사자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10,840,822	6,211	257,448	215,980	49,006	166,974	157,795	17,171	140,624	4,758	244,507	204,395	46,985	157,410	148,541	16,056	132,485	1,453	12,941	11,585	2,021	9,564	9,254	1,115	8,139				
서울	1,900,102	484	17,573	15,936	2,934	13,002	11,843	1,112	10,731	248	15,472	13,946	2,529	11,417	10,348	977	9,371	236	2,101	1,990	405	1,585	1,495	135	1,360				
부산	818,835	125	7,349	5,794	1,215	4,579	4,302	410	3,892	108	7,196	5,655	1,196	4,459	4,196	397	3,799	17	153	139	19	120	106	13	93				
대구	519,405	264	10,453	9,241	1,816	7,425	7,043	653	6,390	162	9,541	8,373	1,690	6,683	6,313	551	5,762	102	912	868	126	742	730	102	628				
인천	575,012	509	21,604	18,179	4,640	13,539	13,077	1,143	11,934	432	20,919	17,601	4,528	13,073	12,610	1,095	11,515	77	685	578	112	466	467	48	419				
광주	261,259	107	4,102	3,375	535	2,840	2,480	230	2,250	95	3,997	3,281	529	2,752	2,400	222	2,178	12	105	94	6	88	80	8	72				
대전	275,406	157	7,993	6,516	1,523	4,993	4,768	508	4,260	115	7,625	6,187	1,483	4,704	4,517	476	4,041	42	368	329	40	289	251	32	219				
울산	202,900	69	2,914	2,439	519	1,920	1,791	142	1,649	52	2,763	2,305	499	1,806	1,675	128	1,547	17	151	134	20	114	116	14	102				
세종	48,115	21	852	728	152	576	528	72	456	18	825	701	151	550	507	71	436	3	27	27	1	26	21	1	20				
경기	2,434,194	2,135	91,414	76,872	19,439	57,433	55,214	6,353	48,861	1,685	87,420	73,370	18,752	54,618	52,400	5,984	46,416	450	3,994	3,502	687	2,815	2,814	369	2,445				
강원	404,489	329	12,358	9,957	2,508	7,449	7,445	985	6,460	242	11,581	9,264	2,388	6,876	6,867	903	5,964	87	777	693	120	573	578	82	496				
충북	368,000	312	11,934	10,970	2,452	8,518	7,536	854	6,682	241	11,297	10,362	2,312	8,050	7,064	787	6,277	71	637	608	140	468	472	67	405				
충남	500,694	349	13,392	11,194	2,561	8,633	8,267	908	7,359	265	12,621	10,555	2,463	8,092	7,769	851	6,918	84	771	639	98	541	498	57	441				
전북	458,975	243	9,584	7,597	1,556	6,041	5,657	714	4,943	193	9,150	7,216	1,499	5,717	5,362	668	4,694	50	434	381	57	324	295	46	249				
전남	506,276	321	11,129	9,096	1,701	7,395	6,786	770	6,016	256	10,549	8,578	1,658	6,920	6,366	726	5,640	65	580	518	43	475	420	44	376				
경북	688,172	435	17,477	13,658	2,716	10,942	10,458	1,155	9,303	358	16,793	13,066	2,628	10,438	9,950	1,098	8,852	77	684	592	88	504	508	57	451				
경남	745,437	280	13,184	11,172	1,996	9,176	8,136	816	7,320	228	12,719	10,754	1,946	8,808	7,801	782	7,019	52	465	418	50	368	335	34	301				
제주	133,551	71	4,136	3,256	743	2,513	2,464	346	2,118	60	4,039	3,181	734	2,447	2,396	340	2,056	11	97	75	9	66	68	6	62				